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재정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박사 부교수 홍성남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합영, 합작기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데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해나가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무역 및 합영, 합작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조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영, 합작기업들에서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를 잘하는것은 기업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지난 시기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고정재산의 현물관리에 대하여 연구되였으며 재정관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내용만을 해설하는데 그치였다.

이로부터 론문에서는 합영, 합작기업들의 고정재산에 대한 옳은 리해와 그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려고 한다.

2. 본론

2.1. 합영, 합작기업 고정재산의 본질과 구분

고정재산은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산과정에 여러번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일부분씩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기계설비나 건물 등이 고정재산의 대표적인 형태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의 가치이전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짧은 기간에 자기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다 이전하는가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재산을 크게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으로 구분할수 있다. 원료, 자재와 같이 한번의 생산과정에 자기의 가치를 새로운생산물에 완전히 이전하는 재산은 류동재산으로 되며 건물이나 기계설비와 같이 생산과정에 점차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이전하는 재산은 고정재산으로 분류된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을 전적으로 가치이전방식에 의해서만 구

분하여 보기는 힘든 점들이 있다. 실례로 합영, 합작기업에서 가지고있게 되는 현금이나 단기은행예금, 단기채권 그리고 장기은행예금이나 장기채권 등은 그의 가치이전방식에 따라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재산들이다.

합영, 합작기업의 재산은 가치이전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의 현금에로의 전환 기간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합영, 합 작기업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기업이지만 우리 나라 국영기업체와는 다르고 또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때문이다.

현금에로의 전환기간을 정하는데서 국제적인 관례는 대체로 1년을 그 기간으로 정 하고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합영, 합작기업에서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현금으로 전환될수 있는 재산은 고정재산으로, 그 이전에 현금으로 전환될수 있 는 재산은 류동재산으로 구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현금은 물론이고 단기은행예금 이나 단기채권 등은 류동재산으로 되고 장기은행예금이나 장기채권 같은것은 고정재산으 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은 여러 생산순환과정에 반복참가하여 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기능을 수행하는 재산과 1년이상의 장 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은 여러가지로 구분해볼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우선 존재방식에 따라 유형고정재산과 무형고정재산. 투자고정재산으로 구분할수 있다.

유형고정재산은 기계설비나 건물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있는 고정재산이다.

유형고정재산을 규정하는데서는 정확한 현물적실체를 가진다는 측면과 내용년한과 가치적크기가 중요시된다.

유형고정재산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설비, 전도장치, 공구기구, 비품, 토지 등이 속 한다.

무형고정재산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있지 않는 고정재산이다.

무형고정재산에는 특허권, 상표권, 자원개발권, 기술비결 등과 같은것이 속한다.

특허권은 법이 정한 기한안에는 발명자의 승인없이 등록된 특허를 마음대로 팔거나 리용할수 없게 된 특권이며 상표권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봉사를 다른 사람의 상품 이나 봉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자원개발권은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등을 개발할수 있는 권리이며 기술비결 은 비밀을 담보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재산들이 무형고정재산으로 분류되는것은 기계설비나 건물 등과는 달리 일정 한 현물적형태를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이며 그것들이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기업에 리익을 가져다주기때문이다.

투자고정재산은 합영, 합작기업이 장래의 리익획득을 위하여 은행 또는 다른 기업 등에 투자한 재산이다. 여기에는 은행에 예금한 장기예금, 다른 기업에 출자한 재산 등 이 속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채권이나 주권에 대한 투자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투자자산에서 그 비중이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영, 합작기업들이 국내에 존재하는 국영기업체들에 주권이나 채 권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으며 중요하게는 주권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가 투기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있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것 과 관련되여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또한 경제적용도에 따라 생산적고정재산과 비생산적고정재산으로 구분할수 있다.

생산적고정재산은 생산적기능을 수행하는 고정재산을 의미한다.

생산적고정재산에는 생산에 복무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설비, 공구기구, 전도장 치 등이 속한다. 생산적고정재산은 감가상각대상으로 되며 마멸액은 생산물의 원가에 포 함되여 감가상각금으로 회수된다.

생산적고정재산은 물질적부의 생산에 직접 복무하며 그 규모와 구조는 합영, 합작기업의 생산적잠재력과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반영한다. 그것은 생산적고정재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질적수준이 개선되는데 따라 물질적부의 생산이 빨라지고 기술발전수준이 높아지기때문이다. 따라서 합영, 합작기업에서 생산적고정재산의 효과적리용은 생산을 그만큼 장성시키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리윤을 더 많이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비생산적고정재산은 비교적 오랜 기간 현물적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생산적기 능을 수행하는 고정재산이다.

비생산적고정재산에는 생산에 복무하지 않는 건물, 사회문화후생시설, 비품, 도서 등이 속한다. 비생산적고정재산은 자기의 가치를 그 어디에도 이전시키지 않지만 생산적고 정재산처럼 오랜 기간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하기때문에 조건적으로 고정재 산이라고 부른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사회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비생산적고정재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지 않지만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복무하는것으로써 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체들에서는 비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지만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이상의 비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 기업체들과 합영, 합작기업에서 비생산적고정재산의 조성에 대한 자금원천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분류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수도 있다.

고정재산은 분류목적에 따라 인민경제부문별, 현물형태별, 관리소속별 등 여러가지로 부류할수 있다.

2.2 고정재산의 현물적변동에 대한 재정관리

2.2.1 고정재산취득에 대한 재정관리

합영, 합작기업은 기업창설과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고정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자체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도 한다. 합영,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기계설비들을 생산경영활동에 받아들이며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대해나간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란 외부로부터 어떠한 대상을 받거나 얻어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취득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고 정재산을 새로 얻거나 받아서 기업소유로 만드는것을 말한다.

고정재산취득에 대하여 잘 알자면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이 어떤 자금을 원천

으로 하여 취득되며 고정재산을 기업소유로 만드는데서 첫 공정인 등록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가격에 대하여 아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정재산취득에 대한 재정관리는 고 정재산취득과정에 따르는 자금보장과 취득한 고정재산을 등록할 때 진행되는 재정관리로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다.

고정재산취득에 대한 합영, 합작기업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고정재 산취득과정에 따르는 자금보장을 잘하는것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자금원천에 따라 투자가들의 출자금과 기업에 조성된 자금에 의하여 취득되며 방식에 따라 건설과 구입에 의하여 취득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은 우선 투자가들의 출자금에 의하여 취득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투자가들의 출자금에 의한 취득은 그 취득방식에 따라 건설에 의한 취득과 구입에 의한 취득으로 나눌수 있다.

건설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대상에는 건물, 구축물, 조립설비 등이 포함된다.

건물과 구축물은 건설을 통해서만 취득되며 설비조립도 본질상 건설에 해당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비에는 조립을 필요로 하는것과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 있다. 조립을 필요로 하는 설비는 추가적인 조립설치작업을 거쳐야 하는것만큼 일정한 기간 로동대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조립을 필요로 하는 설비를 대상설비라고 한다.

조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설비는 자동차와 같이 추가적인 조립공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정재산으로 기능하는 설비로서 이것을 단독설비라고 한다.

건설에 의한 고정재산을 취득하는데서 재정관리의 중심은 출자과정을 통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면서도 계약대로 건설을 진행하고 건설물의 질을 높 이도록 하며 건설투자에서 경제적효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건설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은 합영, 합작기업의 투자가들이 체결하는 계약과 그에 따라 진행되는 출자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고 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건설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은 새로 건설하는 고정재산의 취득과 이미 건설된 고정재산의 취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새로 건설하는 고정재산이든 이미 건설된 고정재산이든 그것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측의 출자몫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가 우리 나라에는 충분하며 또한 건설비용을 우리측이 담당하면 총출자액가운데서 우리측의 출자몫을 늘일수 있고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기때문이다.

건설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출자몫을 우리측이 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재정관리는 해당한 출자금 즉 건설비와 건물비, 설비조립비를 합영, 합작기업의 투자쌍방이 다같이 인정할수 있도록 옳게 규정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건설비는 건물, 구축물 등의 고정재산을 새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대체로 새로 건설하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건설에 들인 비용을 요소별로 국제시 장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그것을 합하는 방법으로 규정할수 있다.

건물비는 이미 건설되여 합영,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건물의 가격으로서 우리측이 부

담할수 있는 총출자액의 구성요소이다.

건물비계산은 이미 리용하던 건물비계산과 새로 건설된 건물비계산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이미 리용하던 건물비계산은 국가표준건설가격에서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 존가격으로 하는데 이때 가격의 기초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이다.

건물의 잔존가격=국가표준건설가격-감가상각액

새로 건설한 건물비는 국가표준건설가격에 기초한다. 국가표준건설가격에 기초한 건설조립공사비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설비조립에 드는 비용도 우리측이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설비조립비에는 설비조립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설비조립에 필요한 자재, 로력, 운수수단 등은 우리측이 부담하고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설비조립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을 비롯한 일부 요소들과 기술은 외국측이 부담할수 있다.

설비조립계산은 설비조립에 필요한 항목별소요량을 다 장악하고 그것을 단위당 국제 시장가격으로 곱하여 합하는 식으로 할수 있다.

설비조립비=
$$\sum$$
 설비조립의 항목별소요량에 따르는 항목별소요량 $^{\times}$ 단위당국제시장가격

구입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대상에는 기계설비, 공구기구, 비품, 기술비결 등이 포함된다.

기계설비비는 합영,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기계설비의 가격이다.

기계설비비계산도 쓰던 기계설비와 새 기계설비로 갈라 그 가격을 계산할수 있는데 쓰던 기계설비는 잔존가격을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합의하며 새 기계설비는 해 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기계설비비는 주로 외국측이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합영, 합작기업창설 목적과 관련된다. 우리가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하는 목적자체가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자 는데 있는것만큼 외국측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외국측이 기계설비투자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을 정확히 장악하고있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계설비비는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평가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시장가격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외국측이 투자하는 기계설비비를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다. 더우기 외국측투자가가 주로 자본주의나라의 법인, 개인들인것만큼 투자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장악하는것은 중요한문제로 나서고있다.

공구기구와 비품비는 우리측의 출자몫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특허 및 기술비결비는 총투자액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합영, 합작기업은 대부분 특허기술이나 기술비결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의 투자를 동반한다. 그것은 외국측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대방의 특허기술, 기술비결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의 투자를 요구하게 되며 외국측은 그것을 우리측의 유리한 생산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해외경쟁력을 높여보다 많은 리윤을 얻으려고 하는것과 관련된다.

특허기술과 기술비결을 투자하다고 할 때 그것은 특허를 받은 기술과 비밀을 담보로

하는 기술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투자한다는것을 말한다. 즉 특허기술이나 기술비결을 투자하는 목적이 사용료 그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리용하여 얻게 될 리윤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사용료가 목적이든 리윤이 목적이든 투자하는 특허기술이나 기술비결의 가격 은 결정되여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외국측이 투자하는 기술비결의 가격을 규정하여야 외 국측이 투자하는 출자액을 정할수 있기때문이다.

특허 및 기술비결비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정할수 있다. 또한 기술을 투자받아 해당한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에는 판매액의 일정한 비률을 특허 및 기술비결비로 할수도 있다.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은 또한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에 의해서도 취득될수 있다.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에 의한 고정재산의 취득의 기본원천은 기업기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으로 적립된 자금, 기업고정재산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등이다.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에 의한 고정재산취득도 그것을 원천으로 하는 건설물의 건설 과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에 의하여 취득된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중심은 실제 로 들인 비용을 타산하여 취득한 고정재산의 시초가치를 정확히 규정한 다음 그것을 제 때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는것이다.

고정재산취득에 대한 합영. 합작기업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취득된 고정 재산등록을 바로하는것이다.

고정재산등록은 고정재산의 가치와 현물량 및 기술상태 그리고 그 변동정형을 일상 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계산하는 사업으로서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의 첫 공정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의 등록은 고정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 에 대한 엄격한 관리질서를 세우며 그의 합리적리용과 정비보수를 위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정확한 감가상각과 원가계산을 위한 전제로 된다.

이로부터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모든 고정재산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 기업재정관리법》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는 사업을 재정관리의 첫 공정으로 밀고나가는것 이 중요하다.

고정재산의 등록은 등록체계에 따라 합영, 합작기업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등록 표시단위에 따라 화폐등록과 현물등록으로 구분된다.

고정재산등록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등록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등록을 제때에 정확히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의 등록은 합영, 합작기업이 가지고있는 모 든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이로부터 고정재산등록대상에는 내용년한이 1년이 넘고 국가가 규정한 가격이상인 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기계설비, 공구기구, 비품, 나무, 집짐승과 같은 유형재산과 재 산권을 비롯한 무형고정재산, 은행 또는 다른 기관에 투자한 투자재산 등 합영, 합작기 업의 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고정재산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고정재산등록대상이 선정된 다음에는 그것을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는것이 중요하다.

합영.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업자체등록은 물론이고 국가가 규 정한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고정재산 취득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기업재산으로 인정될수 있다는것이며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해당 법이 그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시행규정세칙》 제19조에는 《기업은 투자완료시점으로부터 3(로동)일안에 고정재산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내부등록을 끝낸 날부터 20(로동)일 안에 해당 관리기관과 중앙세무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밝혀져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등록사업을 진행할 때 고정재산등록대장을 갖추고 거기에 취득한 고정재산을 등록하는 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회계검증을 비롯한 국가검열이 진행될 때 고정재산과 관련한 증빙문건으로서 보여줄수 있기때문이다.

합영, 합작기업은 투자완료시점으로부터 3(로동)일안에 고정재산을 유형고정재산과 무형고정재산으로 구분하여 장소별, 형태별, 투자가별, 감가상각고정재산과 비감가상각고 정재산별로 고정재산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고정재산등록대장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고정재산명, 규격, 시초가치, 내용년 한, 설치장소, 생산년월일, 생산지, 취득년월일 등이 밝혀져있어야 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산자원, 산림자원을 해당 승인서에 따라 등록하며 생산과 경영 활동이 지하에 설치한 구조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토지리용과 관련한 등록 은 실지 리용하고있는 지하토지리용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건물은 그에 붙어있는 부대시설들을 포함하여 등록하며 지상에서 리용하는 면적은 적으나 지하에서 생산과 봉사활동과 관련한 건축물을 리용하는 경우 지하건축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구축물과 전도장치는 대상별로 그에 설치된 (부대)시설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등록하며 기계설비는 주설비와 계기, 안전시설 등을 포함하여 매개 설비별로, 개별적기계들은 독립적인 고정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구기구, 비품은 품종별 및 규격별로, 집짐승과 나무는 종류별로, 도서는 책별로, 설계도면은 그에 붙어있는 설계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등록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등록가격을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등록가격을 옳게 규정하여야 해당 시기 합영, 합작기업에서 보유하고있는 고정재산의 총가치크기에 대하여 알수 있으며 감가상각을 정확히 할수 있다.

고정재산의 등록가격은 그 현물량과 가치크기사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사이의 대비성이 옳게 보장될수 있도록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여야 각이한 시기에 서로 다른 가격에 의하여 조성된 고정재산의 동태와 현존 고정재산의 가치상 움직임을 현물량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따져볼수 있기때문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우선 시초가격으로 등록할수 있다.

시초가격은 고정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 실지 든 비용에 기초하여 계산한 가격이다.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은 고정재산취득가격에 운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보관비 같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다.

> 고정가격의 = 고정재산 시초가격 취득가격 +(운임+상하차비+보험료+설비비+보관비)

시초가격에 의한 등록은 고정재산의 마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재산의 완전한 가치를 화폐적으로 표현한것이므로 고정재산의 가치형태를 현물량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알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고정재산의 실태를 동일한 가치수준에서 계통적으로 대비분석할 수 있게 하며 정확한 감가상각과 원가계산을 할수 있게 한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은 또한 재평가가격에 의해서도 등록할수 있다.

재평가가격은 지난 시기에 취득한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가치를 현행 국제시장 가격수준에 의하여 다시 평가한 가격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기업을 다시 갱신하거나 정리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제 기될 때 고정재산의 취득시기에는 관계없이 기업이 가지고있는 모든 고정재산을 현행 국 제시장가격수준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등록할수 있는데 이때 등록가격이 바로 재평가 한 가격이다.

재평가가격에 의한 고정재산등록은 시초가치에 의한 등록의 부족점을 없애고 서로 다른 시기 각이한 국제시장가격에 의하여 취득된 고정재산을 현행 국제시장가격에 의하 여 정확히 반영되게 함으로써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의 규모를 옳게 장악할수 있 게 하다.

그러나 재평가가격에 의한 고정재산등록은 국제시장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이 사업에 많은 시간이 드는 조건에서 매월, 매 분기, 매년 한다는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므 로 재평가등록사업은 일반적으로 고정재산을 시초가치로 등록하였다가 그것이 국제시장 가격과 대비하여볼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기업을 다시 갱신하거나 정리하는것 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현행 국제시장가격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2.2.2. 고정재산철수에 대한 재정관리

고정재산철수는 고정재산의 현물적감소를 일으키는 고정재산의 변동을 의미한다.

고정재산철수는 페기와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그에 대한 재정관리도 페기 와 양도에 대한 관리로 나누어 진행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철수에는 무엇보다먼저 고정재산의 폐기가 있다.

고정재산페기는 내용년한이 다되였거나 기술경제적측면에서 더는 쓸수 없게 된 고정 재산을 그 등록에서 삭제하는것이다.

고정재산의 페기는 합영, 합작기업에서 생산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때문 에 페기원인과 내용을 심중히 따져보고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 결정에 의해서만 폐기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의 결정으로 등록된 고정재산을 페기하 는 경우 해당 법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정한 페기규정과 절차에 따라 페기에 대한 재정 처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의 폐기는 내용년한보다 오랜 기간 리용함으로써 물리 적으로 완전히 마멸되여 더는 리용할수 없게 되였을 때, 자연재해나 그밖의 원인으로 파 괴 또는 손상되여 더는 쓸수 없게 되였을 때, 보관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수리복구할수도 없게 부식, 파손되였을 때, 물리적으로는 쓸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마멸되여 그 리용이 경제적손실로 인정될 때 진행할수 있다.

고정재산페기와 관련한 재정처리에서 중요한것은 합영, 합작기업이 취득한 고정재산 의 시초가치와 실제가치, 페기비와 회수자재, 고정재산의 페기손익파 내용년한이 되지 못 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에 대한 재정적장악과 통제를 잘하는것이다.

고정재산페기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페기에 드는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이다. 페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요소별로 계산하고 장악할수 있으며 이때 그 원천은 감가상각금으로 하도록 하는것이다. 그것은 고정재산의 총마멸액을 계산할 때 거

기에 페기비를 포함시켰기때문이다.

고정재산폐기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내용년한전에 이러저려한 원인 으로 폐기하였을 때 내용년한 미달기간의 감가상각금을 정확히 계산하는것이다.

합영, 합작기업의 잘못으로 내용년한이 되기 전에 폐기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내용년 한 미달감가상각금가운데서 대보수비몫을 던 나머지를 원가에서 보상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적일군이나 생산자의 잘못으로 내용년한이 되기 전에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실액을 변상시킬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철수에는 다음으로 고정재산의 양도가 있다.

고정재산양도는 합영, 합작기업에서 리용하던 고정재산을 다른 합영, 합작기업이나 우리 나라 기업체에 넘겨주는 고정재산현물변동의 한 형태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양도는 철저히 유상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합영, 합작기업이 국영기업체가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 기업체들에서 고정재산이관은 같은 소유안에서의 현물적변동인것으로 하여 대체로 무상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 유상의 방법으로도 진행된다. 그러나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양도는 많은 경우 유상의 형태를 취하며 경우에 따라 증여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고정재산현물변동에 대한 재정적관리에서 고정재산실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정재산실사는 합영, 합작기업에서 고정재산의 현물량과 계산금액을 서로 대비하여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재산관리에 대한 재정적장악과 통제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해마다 한번이상씩 고정재산을 실사하는 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기업이 가지고있는 고정재산에 대하여 현물 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정확히 알수 있고 생산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수 있기때문이다.

실사결과 장부상재고보다 고정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등록하고 장부상재고에 비하여 고정재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3. 고정재산의 가치적변동에 대한 재정관리

고정재산은 생산경영활동과정에 가치적으로 마멸된다.

고정재산의 가치적변동에 대한 재정관리는 감가상각금을 통하여 실현된다.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마멸액보상기금 다시말하여 제품판매수입(봉사수입)가운데서 생산(봉사)과정에 마모되여 넘어온 고정재산의 가치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화폐형태로 떼놓은 자금이다.

감가상각은 고정재산의 가치적재생산을 반영하는 경제범주이다.

각이한 형태로 일어나는 고정재산의 마멸액은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에 이전 되여 원가에 포함된다. 그 이전은 현물적이전이 아니라 가치적이전이며 단 한번의 이전 이 아니라 점차적이며 부분적인 이전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전된 고정재산의 마멸액은 생산물이 실현되는데 따라 화폐형태로 회수된다. 이와 같이 고정재산의 마멸액이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되여 화폐형태로 회수된 자금이 바로 감가상각금을 이룬다.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재생산의 원리에 따라 두가지 용도에 리용될수 있다. 그 하나

의 용도는 고정재산대보수자금원천으로 리용하는것이며 다른 하나의 용도는 고정재산을 새것으로 바꾸기 위한 갱신투자원천으로 리용하는것이다.

감가상각금이 이와 같이 두가지 용도에 분배리용되는것은 고정재산의 재생산이 대보 수와 갱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정과 관련된다.

대보수가 내용년한기간에 주기적으로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실현하는 형태라면 갱신 은 내용년한이 지난 다음에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실현하는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가상각금은 일정한 기간 유휴화폐예비로 축적되게 된다.

감가상각금이 유휴화페예비로 축적되는것은 고정재산의 현물적재생산과 가치적재생 산이 시간적으로 배리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이 화폐예비로 축적되여 유휴상태에 놓이는 기간은 고정재산 의 대보수와 갱신주기에 의존한다. 대보수와 갱신주기가 길면 길수록 유휴상태에 놓이는 감가상각금의 규모가 커지며 짧으면 짧을수록 그 규모는 작아진다.

감가상각금이 화폐예비로 적립되는 기간에 고정재산재생산의 사명은 잃지 않지만 혀 실적기능은 잃는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보수주기에 해당한 기간 또는 갱신이 있을 때까지 내용년한의 전기간에 지속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보수에 쓰일 감가상각 금은 1년이상, 갱신에 쓰일 감가상각금은 내용년한의 전기간에 유휴화페예비로 축적된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적생산과정을 반영하는 범주로서 고정재산 재생산을 실현하는 경제적공간으로, 그 원천으로 기능한다.

고정재산의 가치적변동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고정재산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바로 규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하여 말하면 기계설비나 건물과 같은 유형고정재산에 대해 서만 적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지로 우리 나라 국영기업체들에서도 유형고정 재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고있다.

그러나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고정재산을 유형고정재산과 무형고정재산으로 구분하 는것만큼 감가상각도 유형고정재산뿐아니라 무형고정재산에 대해서도 진행하여야 과학적 이다. 그것은 특허권과 같은 무형고정재산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 합영, 합작기업의 재 정수입조성에 기여하는것만큼 해당 무형고정재산의 취득에 들인 비용을 그의 리용기간내 에 점차적으로 회수하여야 하기때문이다.

만일 무형고정재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의 취득에 들인 비용을 전부 결산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여 합영, 합 작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옳게 계산평가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감가상각적용대상에 유형고정재산뿐아니라 무형 고정재산도 포함시킬수 있다.

고정재산의 가치적변동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 금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감가상각금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고정재산재생산을 위한 자금원천조성에서 중 요한 문제로 나선다.

원래 감가상각은 마멸액의 타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마멸액이 판 매수입에서 공제적립되여 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기초로 되기때문이다.

마멸액타산에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실제마멸액을 그대로 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 고정재산에 대하여 매달 마멸정도를 기술적으로 검측하고 평가해야 하기때

문에 실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실제마멸액을 실정에 맞게 가장 근사하게 반영하는 계산방법에 의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재산의 유효수명의 년수에 따라 가격을 등분하여 상각하는 방법과 순장부가치의 일정한 고정비률만큼 해마다 상각하는 방법, 자산의 유효수명의 마감때보다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방법, 생산량과 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 창설되는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계산을 리용되는 유형고정재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우선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계산을 평균마멸액계산방법인 정액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정액법은 매해 일정한 량만큼씩 평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합영, 합작기업의 감가상각금계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리용되는 방법이다. 정액법에서 년감가상각금의 크기는 내용년한의 전기간에 감가상각하여야 할 총마멸대상액과 내용년 한에 의하여 규정할수 있다.

총마멸대상액은 내용년한 전기간에 총체적으로 마멸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것으로 규정된다.

총마멸대상액은 시초가격에 대보수비와 폐기비를 합하고 잔존가치를 더는 방법으로 규정할수 있다.

> 고정재산 = 고정재산 총마멸대상액 시초가격

시초가격은 기본마멸대상액으로서 취득가격에 운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교환비 같은 비용을 합한것이며 페기비는 마멸대상액이 아니라도 해당 고정재산에 투하되는 비용으로서 그의 회수를 위하여 총마멸대상액에 포함시킨다. 잔존가치는 유형고정재산을 내용년한까지 다 리용하였을 때의 가치로서 여기에는 남아있는 자재나 부속품과 같은 회수자재비 같은것이 포함되며 이것은 마멸대상액이 아니므로 공제해야 한다.

내용년한은 고정재산이 현물적형태와 기술적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능할수 있는 기간이다. 즉 고정재산이 처음 조성된 때로부터 고정재산이 마멸되여 자기의 기능과 사 명을 계속할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은 해당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과 관리리용사업을 잘할수 있게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두가지 요인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액법에 의한 유형고정재산의 년감가상각 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

정액법에 의한 = $\frac{ | \sqrt{2} + | \sqrt$

여기서 유형고정재산 폐기당시 잔존가치크기를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그것은 내용년한이 지난 유형고정재산의 잔존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잔존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도는 그 유형고정재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률을 걸어 일률적으로 정하는것이다. 이때 이 비률은 여러가지 고정재산의

폐기당시 잔존가치의 크기를 분석하여 그의 평균값에 최대로 접근할수 있도록 규정되여 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비률을 10%로 하고있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을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유형고정재산(단독설비)의 취득가격(시초가치)이 100만원이고 내용년한은 10년, 대보수비는 20만원이고 대보수주기는 3년, 폐기비는 5만원인 경우

잔존가치 = 1 000 000 ×
$$\frac{10}{100}$$
 = 100 000(원)
년감가상각금 = $\frac{(1000\ 000+200\ 000×3+50\ 000-100\ 000)}{10}$ =155 000(원)

즉 매해 15만 5천원씩 10년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정액법은 고정재산의 리용정도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량만큼씩 감가상각을 하므로 일명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정액법은 감가상각금을 비교적 쉽게 계산하는 좋은 점을 가 지고있어 일반적으로 합영, 합작기업들에서 많이 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점이 있는 반면에 정액법은 고정재산의 리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수 없고 특히는 고정재산의 도 덕적마멸과 같은것을 고려하기 어려운 부족점도 가진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그라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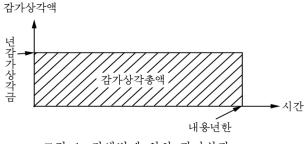


그림 1.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또한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계산을 가속상각계산방법인 정률법으로도 진행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속상각이란 말그대로 고정재산의 가치를 빨리 상각한다는것이다. 가속 상각에 의하여 고정재산의 가치는 그의 내용년한이나 실지 가치이전정도에 관계없이 빠른 기간에 상각되게 된다.

가속상각의 특징은 해당 유형고정재산의 마멸정도가 처음에는 빠르다가 점차 완만해지며 또한 능력도 초기에는 높지만 점차 떨어진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속상각이 적용되게 된 중요한 요인은 기계설비의 갱신주기가 빨라져 내용년한에 기초하여 매해 평균적으로 상각하는 정액법이나 생산량, 작업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생산고비례법 등으로는 도덕적마멸로 인한 손실을 메꿀수 없게 된다는데 있다.

가속상각법을 도입하게 되면 실지 가치이전정도에는 관계없이 기계, 설비의 감가상 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것으로 될수 있으므로 기업의 리윤이 사실보다 적게 산출되 고 따라서 기업소득세가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자 본주의나라에서 기업체들이 가속상각법을 도입하여 착취관계를 은폐하고 많은 리윤을 얻고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 국영기업체들에서는 가속상각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합영,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그것은 합영, 합작기업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법인기업이기는 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이 이 기업에 참가하고 또한 이 방법이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가속상각법에는 정률법과 2중체감법, 년수합계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합영,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2중체감법이나 년수합계법은 적용되지 않고 정률법만이 가속상각방법으로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갱신주기가 빠른 일부 고정재산에 한하여 적용하고있다.

정률법은 유형고정재산의 시초가치 즉 미상각잔고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년감가 상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금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률법에의한
$$=$$
 미상각잔고 $\times \frac{감가상각률(정률)}{100}$

감가상각률
$$=1-\sqrt[n]{\frac{잔존가치}{취득가격}}$$
 $(n: 내용년한)$

미상각잔고=취득가격-감가상각루계액

우의 식대로 감가상각금을 계산적립하면 내용년한이 다되여도 고정재산의 시초가치를 다 상각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마지막 2년동안에는 미상각잔고를 평균하여 년감가상각금을 계산적립하게 된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유형고정재산의 취득가격(시초가치)이 10만원이고 내용년한이 5년인 경우

첫해

미상각잔고=감가상각하여야 할 총금액=취득가격-잔존가치= =100 000-10 000=90 000(원) 년감가상각금=90 000×0.37=33 300(원)

- 둘째 해

미상각잔고=90 000-33 300=56 700(원) 년감가상각금=56 700×0.37=20 979(원)

셋째 해

미상각잔고=56 700-20 979=35 721(원) 년감가상각금=35 721×0.37=13 216.77(원)

- 넷째 해

미상각잔고=35 721-13 216.77=22 504.23(원) 년감가상각금=22 504.23/2=11 252.115(원)

- 다섯째 해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금을 계산하면 처음에는 감가상각금이 많이 계산되지만 내용년한이 다 되여올수록 감가상각금이 점점 적어진다. 때문에 정

률법을 체감법이라고도 한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그라프로 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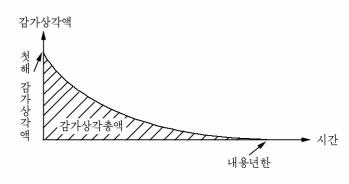


그림 2.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또한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계산을 생산고비례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생산고비례법은 유형고정재산의 리용정도와 생산량에 비례하여 년감가상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일나무와 같이 그 생산성이 내용년한기간에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고 변화되거나 여러가지 운수수단과 같이 리용정도에 따라 그의 마멸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고정재산에 적용할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단위생산량당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고 그에 생산량을 곱하는 식으로 감가상각금을 계산할수 있다.

해당 기간의 = 생산량단위당 해당 기간의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삼차양단위당 = (취득가격-잔존가치) ** 참가상각액 ** 예정된 사용기간의 총생산량

합영, 합작기업에서는 유형고정재산뿐아니라 무형고정재산에 대하여서도 감가상각을 진행하다.

합영, 합작기업에서 진행하는 무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은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는 합영, 합작기업의 일반관리에 리용되는 유 형고정재산은 제외하고 대체로 제품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무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재산의 리용이 제품의 생산에 직접 결부되여있어도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관리비로 계산되게 된다. 그것은 특허권과 같은 무형고정재산의 가치이전정도를 생산물별로 구체화하여 계산하기 어렵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유형고정재산에 대해서는 정액법, 생산고비례법과 함께 정률법과 같은 가속 상각법이 적용되지만 무형고정재산에 대해서는 정액법만이 적용되다.

특허권이나 상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재산의 시초가치는 그것을 구입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 연구개발비와 같은 무형고정재산의 시초가치는 연구개발활동에 실지 지출된 비용으로 계산한다.

무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계산에서는 잔존가치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형 고정재산은 유형고정재산과는 달리 보유기일이 끝나면 현물로 남는 회수자재와 같은 잔 존가치가 없기때문이다.

3. 결 론

론문은 합영, 합작기업고정재산의 본질과 그 구분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대한 현물적 및 가치적측면에서 재정관리를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 하여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였다.

우리는 현물적 및 가치적요인에 의한 고정재산의 변동실태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에 대한 재정적관리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문제들을 심화시 킴으로써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합영, 합작기업의 고정재산재정관리를 개선하고 대 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시초가격, 무형고정재산, 합영, 합작기업, 출자금